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4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4. 10. 16.

판결 선고2024. 11.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2.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23. 12. 11. 접수 제106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

1) 원고는 원고 소유인 전남 장흥군 E 대 672m²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9.91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가단122호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3. 2. F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것 등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2) F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22나548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4. 13.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다235874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6. 2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및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1) D은 2023.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23. 7. 6.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D을 F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수권결정 및 이 사건 선지급결정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G로 대체집행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30.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관한 수권결정(이하 '이 사건 수권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H로 이 사건 수권결정에 따른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1. 14.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7,3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선지급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선지급결정에서 지급할 것을 명한 17,300,000원을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D은 이 사건 선지급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8. 27. 항고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3라5767호), D이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그 재항고심이 계속 중이다.

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이 사건 가등기 경로

1) 피고와 D 사이에, 2022. 9. 1.자로 피고의 미지급 급료 채권 3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D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급료지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2) D은 2023. 12.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2.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23. 12. 11. 접수 제10692호로 2023. 12.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4, 15호증, 을 제5, 6,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가 D에 대한 급료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D에 대한 급료채권의 대물변제를 위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이고,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사이에 피고가 D이 지배인으로 재임한 주식회사 I에서 D의 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급료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은 원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받은 판결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에 관련된 여러 소송이 재판계속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당하다. D은 원고의 부모인 B, J에 대한 채권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도 않다.

3.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매매예약 성립일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매매예약 일자가 2023. 12. 1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일을

2023. 12. 11.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3. 12. 11.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날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23. 12. 11. 성립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2023. 12. 7.자 매매예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D이 피고의 급료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합의를 곧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23. 12. 7.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와 별도의 매매예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일자는 2022. 9. 1.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 9. 1.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에 그 작성일자 무렵인 2022. 8. 29. 발급된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서가 사후에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22. 9. 1.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의 성립일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대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므로,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대체집행비용 채권의 성립일은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선지급결정의 결정일은 2023. 11. 14.이므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의 성립일은 2023. 11. 14.로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이 이 사건 매매예약 성립일 이후인 2023. 11. 14.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도 본다.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은 D이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F의 승계집행인이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가장 앞선 시기로 보더라도 D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르러서야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D이 이 사건 매매예약 성립일 이후인 2023.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일 당시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이 사건 선행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 성립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대체집행비용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구세회

별지